

발 간 등 록 번 호

진흥원-2018-201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안내

2018. 11.



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목 차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3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4
3.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5
4.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7
5.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9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11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13
2. 보육교사 자격기준	18
3. 보육실습 변경사항 세부 기준	28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32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안내	35
1.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37
2. 단체신청 유의사항	49
질문과 답변	53
부록	65
[부록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대학교)	67
[부록 1-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보육교사교육원)	68
[부록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공문 예시	69
[부록 3]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환불 요청 공문 예시	70
[부록 4] 보육실습확인서	71
[부록 5]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예시	73
[부록 6] 대면교과목 확인서 예시	74
[부록 7] 유사교과목 확인서 예시	75
[부록 8]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75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 도입 배경

-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 및 사군구청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불가능하여 자격 요건 심사의 어려움 발생,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됨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국가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을 관리하고자 함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도입

-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법 부칙(제7153호, 2004. 1. 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5. 1. 30. 이후부터 시행됨

■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도입

- 2005. 12.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법 부칙(제7785호, 2005. 12. 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6. 12. 30. 이후부터 시행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 도입 배경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 9인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및 사군구청에서 특수교사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해 왔음
-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 8. 4.), 시행(2012. 8. 5.) 됨. 또한, 시행령 제정(2012. 8. 3.) 및 시행(2012. 8. 5.)으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2015.7.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을 통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장애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도입

- 2016. 3.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순차적인 배치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21호, 2015.7.1.)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15. 7. 1.부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배치시기
 -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 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3 자격증(자격확인서) 종류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자격증 종류	내용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일반 어린이집 원장	30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사람은 가정,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가정·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가정 어린이집 원장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만 3세미만의 영아만을 20명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40인미만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 '05. 1. 29.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1급, 2급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함. '05. 1. 30. ~ '14. 2. 28. 이후 및 현재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자격 취득 시 교부 불가

■ 보육교사 자격증

자격증 종류	내 용
보육교사 1급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05.1.29. 이전법) -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승급자
보육교사 2급	-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05.1.29. 이전법)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자 - 보육교사 3급 취득 후 승급자
보육교사 3급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 수료자

☞ 상위자격 취득 시 하위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음(예: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시 보육교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 발급 불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자격증 종류	내 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자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온라인 및 집합교육) 이수자

☞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별도의 자격으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특수학교 정교사 2급(유치원 과정)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 중, 이수구분이 ‘특수교사’ 인 자를 대상으로 함

4 보육교직원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증 수여권자 및 자격검정·발급기관

가. 수여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나. 자격검정 및 발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과 자격확인서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며 한국보육진흥원장 명의로 발급함

☞ 관련 근거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7.1.)

■ 자격검정 방법

가. 자격검정 방법 : 무시험 검정

-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7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나. 자격검정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자격증 발급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 경과 후 자격증을 재발급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취소자격 재교부를 받은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됨

5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 신청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www.chrd.childcare.go.kr)에서 인터넷 신청
 - ※ 2010년 12월 신청방법 단일화로 인터넷 신청 필수
- 신청 시 수수료 납부(10,000원)
 -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자는 수수료 납부 제외
-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자격증 신청 후 진행현황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www.chrd.childcare.go.kr) 마이페이지에서 조회(자격 인정의 경우, 교부일자 이후 자격번호 확인 가능)
 - ※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서류접수완료' 후 반환 불가

■ 발급절차

- 발급기간: 서류접수 후 14일 이내

신청절차	내용	주체
회원가입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급수) 선택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사진파일 등록	신청인
↓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신청인
↓		
서류제출	- 발급신청서 출력 -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으로 제출	신청인
↓		
자격검정	- 구비서류를 통한 자격검정	진흥원
↓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진흥원

※ 서류 발송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04303)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어린이집 유형별 원장 자격기준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 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아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 자격관련 세부 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 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 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아동간호 업무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취득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 실시주체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 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이미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운데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회**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종전(2005.1.29. 이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40인 미만 또는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보육교사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관련 세부 경력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관련 세부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변경사항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4])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

●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 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3개 영역, 17과목(51학점) 이상	

☞ 각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어야 함

● 대면교과목

- 적용대상 교과목: 9개 교과목
- 실시방법: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영역	교과목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사이버대학 등 원격 교육기관에서 17.1.1. 이후 대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8시간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여부를 성적증명서* 또는 '대면교과목 이수 확인서' 를 통해 확인

*대면 이수 여부를 성적증명서 상에 표기

■ 보육실습 기준

- 대면교과목 중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은 다음을 따름

구분	기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실습기관의 평가인증 유지시점은 보육실습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동일기간 동안 보육실습 3인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8시간 미만이나 초과는 인정불가)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보육실습 세부기준은 p.28 참고

■ 적용대상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대학 등을 입학한 사람은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대상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함
- 학점인정 기관 등은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취득하는 사람이라도 2017.3.1. 전 아래의 대상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로 인정

☐ 대상 교과목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대학입학자의 경우

[사례]

- 2016.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7년 2학기에 “보육교사론” 교과목 이수를 시작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에 따라 교과목 이수
- 2016.3월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2016.12월에 시작하는 동계 계절학기에 “아동복지(론)”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 미적용

－ 학점인정 기관에서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사례]

- 2018.2월에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2월까지 “아동복지(론)” 교과목을 이수 완료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2018.2월에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7.3월 이후에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교과목을 이수 완료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에 따라 교과목 이수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기존 인정기준 유지)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 실무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가 개정기준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 교과목 인정범위

- (적용대상) 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2017.1.1. 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2018.1.1. 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와 복지
영유아교육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

- 2016.3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아동복지(론)” 대신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2017.8월에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아동문학” 대신 “아동문학교육”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개정기준(2016.8.1. 시행) 대상자가 종전기준(2014.3.1. 시행)에 따른 교과목 이수 시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적용대상)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 명
영유아교육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례]

- 2018.2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아동문학교육” 대신 “아동문학”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

※ 상기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외의 교과목에 대해서 법령 교과목과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교과목 심의를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동일심사 기준에 한해서 해당 대학, 해당학기 이수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

(제출서류: 유사교과목 심의요청 공문, 유사교과목 확인서, 해당 교과목의 해당연도 및 해당 학기 강의계획서)

“영아발달” , “유아발달” 교과목의 통합(“영유아발달”)에 따른 이수 방법

-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가 “영아발달” ,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 방법
- (적용대상) 2014.1.~2016.12. 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구분	인정기준
“영아발달” , “유아발달” 교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한 경우	영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유아발달 + 영유아발달 이수 → 인정
“영아발달” , “유아발달” 2과목 모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영유아발달 +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필수 영역인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영유아발달 +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 → 인정

[사례 1]

2015년도 대학에 입학하여 “영아발달(3학점)”을 이수하고 2016년에 휴학, 2017년에 복학하여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만 개설된 경우

→ “영아발달(3학점)”, “영유아발달(3학점)” 이수 시 인정

[사례 2]

2016년 대학 입학자가 보육필수 영역에서 “아동복지(론)(3학점),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과정(3학점), 보육교사론(3학점)”교과목을 이수하고 휴학, 2018년에 복학하여 교육과정 변경으로 “영유아발달(3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보육필수 영역에서 1과목 3학점이 부족한 경우

→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아동상담(론)(3학점)”을 이수하여 해당 영역 기준인 1과목 3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아동생활지도(3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보육필수 영역에서 이수한 5과목 15학점과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추가로 이수한 “아동생활지도”를 합산하여 총 6과목 18학점을 이수하였으므로 인정

○ 개정기준(2016.8.1. 시행) 대상자가 “영유아발달” 교과목 이수 불가 시 교과목 이수 방법

- (적용대상) 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

- 2017.1.1. 이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2018.1.1. 이후 학점은행제(고등교육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대학 포함)등을 통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 명	인정기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영역)	영유아발달	영아발달 + 유아발달 이수 →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영아발달”, “유아발달” 교과목 이수로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에서 초과되는 학점이 발생한 경우에도 ‘교사인성’,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실무’ 각 영역별 이수기준은 충족해야 함

[사례]

2017.3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영유아발달”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사례]

2018.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 예정인 사람이 2016년에 “유아발달”, “영아발달”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변경사항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5])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16.1.12. 개정, ' 16.8.1. 시행)

■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 (3학점), 아동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 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 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 교수방법 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 학점), 어린이집 운영관리(3학점)	18과목 (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 (7학점)
전체	3개 영역, 22과목(65학점) 이상	

* 과목당 평가점수는 70점 이상이며, 보육실습 기준은 보육교사 2급과 같음

■ 적용대상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8.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3

보육실습 변경사항 세부 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구 분	기 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이론수업 진행 시 대면교과목에서 정한 8시간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기준 미적용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동일기간 동안 보육실습 3인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 기준(8시간 미만이나 초과는 인정불가)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성적 표기가 P일 경우는 보육실습 이수 인정 불가)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자(12과목 35학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 ※ 보육실습Ⅰ 과목을 2학점으로 개설하고 보육실습Ⅱ 과목을 2학점으로 2회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보육실습Ⅰ과 보육실습Ⅱ의 합산한 학점이 총 3학점 이상이므로 인정

■ 보육실습 실시 기준

- 실습기간

-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까지) 6주, 24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주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24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12월부터 시작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4주 160시간 실시 가능
- ※ 종전 기준에 따라 4주, 160시간을 실시하는 경우 아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보육실습 실시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잔후 방학 포함)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I, II)을 개설한 경우 : 개설학기 잔후 방학에 각 1회씩 나누어 실시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 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 2017.1.1. 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단, 2018.1.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기준 적용
-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 을 통해 확인

－ 실습 인정시간

-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8시간 미만이나 초과는 인정불가)

－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는 동일한 실습 기간 내에 1인당 보육실습생을 3인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 지도를 할 수 있음(2018 보육사업안내, p.200)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교육원장) 직인을 받아 원본을 제출
 - ※ 보육실습확인서 예시: 부록4 참고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잘못된 실습정보를 등록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출력 후 오기재된 정보에 두 줄을 그어 올바르게 작성 후, 오기재 사유를 기재하고 어린이집 원장 직인을 찍어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최초 인가일자와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가증)
 -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부록5 참고)
 - 방과 후 과정 운영 확인서(유치원의 경우)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안내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방법

-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부록8 참고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관련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함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¹⁾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관련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편입학 시기에 따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적용 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편입하거나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종 학력의 편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적용사례〉

- ① '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② '12. 8. 4. 이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학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③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당시(20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 법 제22조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안내

1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1) 단체신청 기본사항

- 대상 : 대학(교) 또는 보육교사교육원 등 교육기관에서 신청 가능
단, 신청인원은 5인 이상 (5인 미만 신청 불가)
 - ※ 동일 자격급수, 동년도 졸업(예정) 또는 수료자에 한해 가능
 - ※ 대학(교)는 동년도 입학 및 동년도 졸업(예정)자에 한해 가능(교과목 이수 기준 동일해야 함)
- 신청기간 : 2018년 12월 3일 ~ 2019년 1월 31일
 - ※ 신청기간 내, 인터넷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신청 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 미비 시, 반송 처리
- 신청방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 진행절차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자신의 자격증 신청 및 진행현황 조회 가능

- 단체신청 관련 상담 안내
 - (전화 상담)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 1661-5666
 - (카카오톡 상담) 친구찾기 → ID 검색 → '보육교사자격' 친구 추가

2) 국가자격증 인터넷 신청방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주소

<http://chrd.childcare.go.kr>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사업자등록번호와 교육기관명을 반드시 입력함
 ※ 교육기관명이 변경될 경우, 탈퇴 후, 새 아이디로 회원가입 진행
- 단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로 문의
 ※ 개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3232)로 문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Certification for childcare teacher
(재)한국보육진흥원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사업안내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자격증신청 | 자료실 | 열린광장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회원가입

01 약관동의
약관의 내용을 잘 읽고 확인하신 후에 체크하십시오.

02 가입여부확인
가입여부확인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 주십시오.

03 회원정보입력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04 가입완료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가입을 위해 가입여부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구부 ☑ 보육교사교육원 ☑ 대학(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단체회원명 []

☑ 소재지 []

가입여부확인

개인로그인 ★ 단체로그인 교육기관

아이디 [] LOGIN

비밀번호 []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증을 로그인

1661-5666
상담처 문의전화
아이디/비밀번호 문의전화 안내
1566-0233

개정 법령 시행(2014. 3. 1)에 따른
자격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자격증 신청 방법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신청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60>

자주하는 질문 FAQ
고객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60>

■ 단체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후 “단체신청 바로가기” 또는 “단체 자격증 신청” 을 클릭하여 신청진행
- 단체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 : 2018.12.3(월) ~ 2019.1.31(목)
 - ※ 단체신청 기간 내에 서류 도착 필요, 서류 도착 순서에 따라 검정, 발송(졸업일 이후) 조치
 - ※ 인터넷 신청 후, 자격증 신청 관련 서류 제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Certification for childcare teacher
(재)한국보육진흥원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사업안내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 **자격증신청** | 자료실 | 입원광장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개인 자격증 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기준
보육교직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안내

나의 구비서류 안내

자격증신청 관련서식

자격증 신청하기

마이페이지

Member Login

한국보육진흥원님
안녕하세요.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2018.12.3.(월)~2019.1.31.(목)

단체신청 바로가기

문의전화 안내

☎ 1661-5666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229번지 중연빌딩 5층
한국 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아이디/비밀번호 문의전화 안내

☎ 1566-0233

공지사항

정책자료

홍보자료

MORE

- 장애훈련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 [2016-02-18]
- 보육교사 자격증 선처리 신청 방법 안내... [2016-02-15]
-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사항 설명회 개최... [2016-01-23]
- 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취득 관련 「영... [2016-01-12]
-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2015-12-14]

개정 법령 시행(2014. 3. 1)에 따른
자격증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자세히 보기

교육통합관리
교육의 신청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기번호조회
서류의 송달상황을 조회 하세요.

자격증 신청 방법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신청방법을 보실수 있습니다. [GO]

자주하는 질문 FAQ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을입니다. [GO]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 기본정보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기본정보 : 회원가입 시 작성한 기본정보 확인
 - ② 졸업일자 : 신청단체의 졸업일자(수료일자) 입력
 - ③ 기본정보와 배송지정보가 동일한 경우 체크박스 선택
 - ④ 배송지 정보 : 신청단체의 수령인 란에는 현재 단체 담당자의 이름, 휴대전화, 일반전화, 배송지 상세 주소 입력
- ※ 단체신청과 관련된 모든 기본 상담은 단체담당자를 통해 안내되므로 연락처 확인필수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자격증 신청
Application

자격증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

- 개인 자격증 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문의전화 **1661-566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연구개발국

단체 자격증 신청

홈 > 자격증신청 > 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Step 3.
신청자
개별사진등록

Step 4.
수수료결제

Step 5.
결제완료

① 기본정보

수령인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140-710 서울 용산구 서계동 주연빌딩 5층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대학교	학과	아동복지학부		
법인유형	학교	졸업일자			

④ 배송지정보

수령인										
수령인 휴대전화	▼		-		-					
						수령인 일반전화	▼		-	
배송지 주소										

③ ☐ 기본정보와 동일함

다음 >

※ Step2 단계부터는 전 단계로 이전이 되지 않으며, 장시간 미사용 시, 입력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 요망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 신청자 개별정보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신청자 정보 입력 전 “이용안내” 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 ※ 단체신청 인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함
 - ② 엑셀파일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여 파일을 불러옴
 - 엑셀파일 A열 1행 ‘신청자명’, B열 1행 ‘주민등록번호’ 문자로 기재필수
 - ※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기호(-)의 작성여부는 관계없음
 - ③ 리스트에 인원을 추가할 경우, ‘추가’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가능(선택)
 - ④ 리스트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정보 검증” 을 클릭하여 신청가능여부 확인
 - ※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은 경우나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여부’ 에 N으로 표기되어 단체신청 불가.(별도 개인 신청 진행)
 - ⑤ 입력한 단체 리스트의 “엑셀저장” 가능(선택)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 단체 자격증 신청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Step 3.
신청자
개별사건등록

Step 4.
수수료결제

Step 5.
결제완료

 신청자 정보 입력 전 이용안내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①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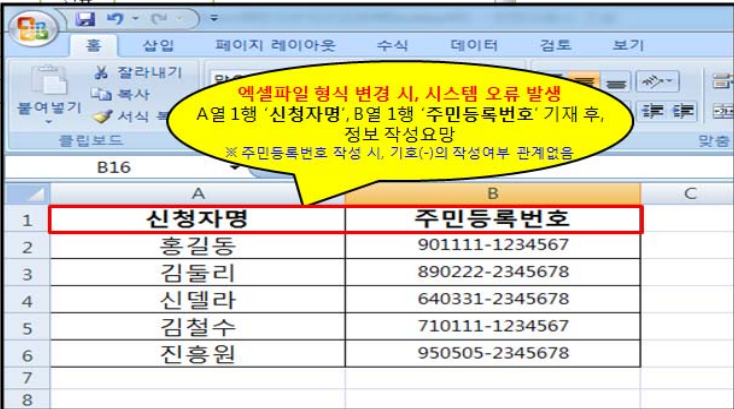
② 엑셀파일 불러오기

③ 추가

④ 신청정보 검증

⑤ 엑셀저장

No	☐ 삭제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가능여부	검증결과
1	☐			신규		
2	☐			신규		
3	☐					
4	☐					
5	☐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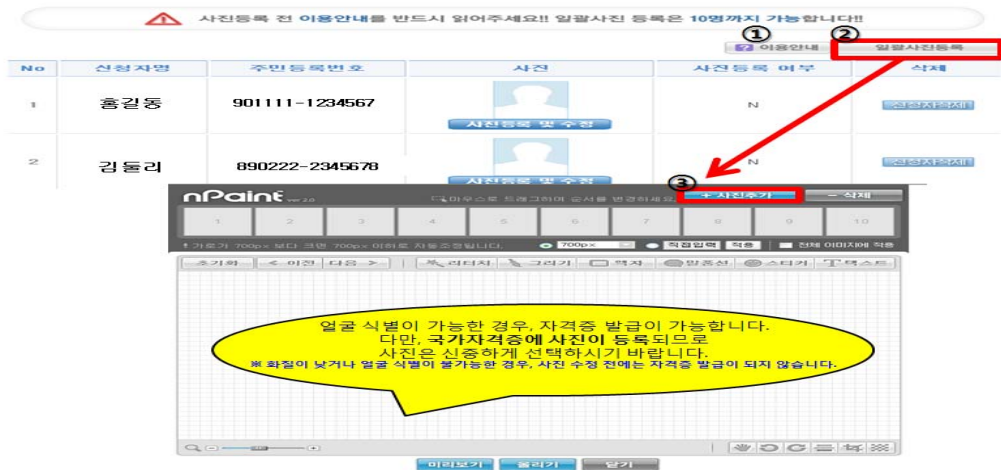


엑셀파일 형식 변경 시, 시스템 오류 발생
 A열 1행 '신청자명', B열 1행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정보 작성요망
 ※ 주민등록번호 작성 시, 기호(-)의 작성여부 관계없음

	A	B	C
1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2	홍길동	901111-1234567	
3	김둘리	890222-2345678	
4	신델라	640331-2345678	
5	김철수	710111-1234567	
6	진흥원	950505-2345678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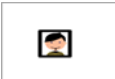
step 3.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

-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 전, “이용안내” 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 ② 일괄 사진 등록을 클릭하여 최대 10명까지 등록 가능
 - ③ 사진 올리기 화면에서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10개 이하로 드래그하여 선택. 선택한 사진은 등록 화면에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 추가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 사진 파일 : 파일형식 JPG(또는 GIF), 해상도 200dpi이상
 - ※ 일괄사진등록 시에는 반드시 파일명을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로 변경하여 신청인의 사진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 (ex : 홍길동900101, 진흥원910101)
- 사진은 마이페이지(나의자격진행현황)에서 ‘판정완료(인정)’ 단계까지 변경가능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 ※ 신청자 개별사진은 시스템에 등록한 사진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진파일 예시>

◆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모자, 선글라스 등의 착용으로 얼굴이 인식되지 않는 경우	 증명사진을 멀리서 찍어 사진의 크기가 맞지 않는 경우	 해상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 이외의 인물이 같이 나오는 경우
--	--	--	--

step 4. 수수료 결제

- 수수료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에 선택

※ 현금 직접 납부 불가

- 수수료금액 : 1인당 10,000원

- 결제방법에 따라 결제를 위한 추가프로그램 설치 가능

- 수수료 입력과 결제 방법 선택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함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 수수료를 결제한 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나의 진행현황’이 ‘서류접수완료’가 된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판정결과가 불인정인 경우도 포함)

④ 수수료결제

출신청인원	명
결제금액	원 (결제수수료는 1인당 10000 원입니다.)
결제방법선택	☒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실시간 결제처리를 합니다. ☐ 가상계좌 :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상계좌로 입금시 실시간 결제처리가 됩니다. ☐ 실시간계좌이체 : 한국보육진흥원계좌로 실시간계좌이체 하는 방식입니다.

▶ 수수료 결제 시 안내사항

- 가상계좌 수수료 결제 시 계좌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수수료를 입금해야 합니다.(5일 이후에는 계좌번호 소멸)
-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은 계좌이므로 반드시 신청 시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환불은 서류접수완료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수수료 환불 규정 등의

- 수수료를 결제한 후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나의 진행현황’이 ‘서류접수완료’가 된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구분	인터넷신청완료(결제완료) ~ 서류접수완료 전	서류접수완료 이후*
환불	100%	0%

*판정결과가 불인정인 경우도 포함됨

■ 수수료 환불방법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취소와 동시에 결제취소 및 환불접수 완료
 - 환불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상계좌 결제자의 환불 방법에 따름
- 가상계좌
 - 자격증(자격확인서) 신청취소 후, 환불요청게시판에 환불접수 양식 작성
 - 작성방법: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열린광장>질의신청>결제/환불요청게시판
 - 단체신청자의 경우, ‘단체신청자 환불 요청 공문’ 별도 제출

step 5. 결제완료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확인 시, 신청 완료
 - ※ 가상계좌결제 경우, 아래화면과 같이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기한 확인 후, 입금은행
입금기한내 미 입금 시, 계좌번호가 자동 소멸되므로 마이페이지에서 ‘결제방법 변경’을
클릭하여 수수료 결제 방법을 재선택하여 진행해야 함
- 전달사항이 있는 경우, ‘전달사항 등록’ 란을 통해 전달 내용 작성 후,  등록 클릭(선택)
ex) ‘단체 신청자 중 동명이인 있음’, ‘신청자(홍길동) 성명 변경함’ 등
- 신청자 명단 리스트 출력을 위하여  클릭(필수)
 - ※ 단체신청 공문 작성 시, 첨부자료로 해당 단체신청자 리스트 첨부
-  클릭 시,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으로 이동하여 자격증 신청내역 확인 가능

단체 자격증 신청

[홈](#) > [자격증신청](#) > [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Step 3. 신청자 개별사진등록

Step 4. 수수료결제

Step 5. 결제완료

지불결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은행명 : 진흥원은행

계좌번호 1111111111111111

입금기한 : 20160000

계좌번호를 확인 하시고 입금기한내에 위 은행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사항 등록

단체신청 진행 과정에서 전달사항이 발생한 경우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 ‘단체신청자 중 동명이인 있음’, ‘신청자(홍길동) 성명 변경하여 주민등록 초본 첨부’, ‘최초 40명 신청 후, 신청취소에 따라 39명 신청함’ 등

등록

리스트로 출력

신청진행현황

44

step 6. 자격증 신청현황 조회

- 자격증 신청현황 조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나의 자격증 진행현황)’ 에서 자격증 신청현황 상세내역 조회
 - ② ‘개인별 신청내역리스트’ 에서 개인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자의 상세내역 조회 가능
 - 예) 검정결과 인정 또는 보류된 사유 등
 - ※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자격번호는 졸업일 이후 확인 가능함
 - ※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 자격번호는 교육수료일 이후 확인 가능함
 - ③ 결제방법 변경 시, ‘결제방법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수단 재선택 후, 진행
 - ④ 전체배송지 수정 시, ‘일괄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배송지 정보를 수정
 - ⑤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단체신청정보” 조회 가능하며 해당 리스트를 출력하여 리스트의 순서대로 개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

○ 나의 자격증신청 진행현황(단체)

● 단체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단체번호	신청방법	결제방법	결제여부
1	16/00/00	G201607-00007	인터넷접수	가상계좌	미결제
	진행상태	총 신청건수	결제접수취소	전체배송지수정	리스트출력
	인터넷신청완료	5	전제취소	일괄수정	출력

● 개인별 신청내역리스트						
단체코드	접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상태	진행상태	사진등록
G201607-00007	T201607-00001	홍길동	901111-1234567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G201607-00007	T201607-00002	김둘리	890222-2345678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G201607-00007	T201607-00003	신달라	640331-2345678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G201607-00007	T201607-00004	김철수	710111-1234567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G201607-00007	T201607-00005	전홍원	950505-2345678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단체신청정보

① 단체신청정보

단체명	한국보육진흥원	학과명	아동학과
단체접수번호 : G201607-00007			
신청인원	5	졸업일자	2016-00-00
신청구분	신규	승급	재교부
인원	5	0	0
배송지주소	(0430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보육사업지원국 자격관리팀		
담당자	진흥원		
연락처	1661-5666	휴대전화	012-1661-5666
전달사항			

번호	단체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1	한국보육진흥원	홍길동	901111-1234567	신규
2	한국보육진흥원	김둘리	890222-2345678	신규
3	한국보육진흥원	신델라	640331-2345678	신규
4	한국보육진흥원	김철수	710111-1234567	신규
5	한국보육진흥원	진흥원	950505-2345678	신규

 **저장**  **다음**

3) 단체신청 제출서류

■ 대학교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1. 단체신청 공문(필수)
※ 공문 양식 : 부록1 참고
2. 자격증 신청자 리스트(필수)
3. 개인별 제출서류(1인당 아래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테이플러로 고정시켜 제출)
 - ① 졸업예정증명서 원본(필수)
 - ② 성적증명서 원본(필수)
 - ③ 보육실습확인서(필수)
 - ④ 그 외 서류(공문 및 추가 제출서류 등)

○ 졸업 후, 제출서류(1주일 내 제출필수)

1.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공문(필수)
※ 공문 양식 : 부록2 참고
2. 졸업확정자 리스트(필수)
3. 졸업증명서 원본(필수)
※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시 제출 서류
 - 대학발행 공문(해당 법령교과목 및 심의요청과목, 심의대상자 포함)
 - 유사교과목확인서(부록7 참고)
 - 해당 연도·학기 강의계획서

■ 보육교사교육원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1. 단체신청 공문(필수)
※ 공문 양식 : 부록1-1 참고
2. 자격증 신청자 리스트(필수)
3. 개인별 제출서류(1인당 아래의 서류를 순서대로 스테이플러로 고정시켜 제출)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필수)
 -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필수)
※ 수료증 내 교육 종료일과 수료일자 일치 확인 필수

-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필수)
- ④ 보육실습확인서(필수)
- ⑤ 그 외 서류(공문 및 추가 제출서류 등)

공통 제출서류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 시	보육실습확인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미등록 시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최초인가일과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가증(고유번호증 불인정) ㉢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확인서 양식 : 부록5 참고
유치원 실습 시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인가사항 확인 공문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 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방과후 과정(종일제)운영 확인 서류 ㉤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 확인서 양식 : 부록5 참고

※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3차 통합지표로 통과했다면 평가인증 유지기간이 연동되지 않으므로, 평가인증 유지기간을 수기로 작성하여 어린이집 직인 날인 후 평가인증 확인서 사본과 함께 제출요망

2 단체신청 유의사항

● 자격증 신청 전 확인사항

구분	제출서류
신청	- 인터넷 신청은 2018년 12월 3일 ~ 2019년 1월 31일까지 - 단체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문의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1661-5666)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단체신청이 불가(개별신청필수)
신청취소/환불	- 인터넷 신청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취소자가 발생할 경우, 인원변경에 따른 단체신청 공문과 환불요청 공문 제출 ※ 공문 양식 : 부록3 참고 - 환불 요청에 따른 입금처리는 환불요청 익월 25일 내외로 처리
서류제출	- 제출서류는 단체신청 기간 내 도착완료 필요, 서류도착 순서에 따라 검정, 발송(졸업일 이후) 조치함 - 전자문서로 단체신청공문을 제출하더라도 서류제출 시, 공문 및 접수리스트 필수 제출 ※ 전자문서 내에서 수신처 지정 시, ‘(재)한국보육진흥원’ 검색 - 공문·접수리스트, 개별목록서류(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추가서류) 순서대로 취합하여 우편 발송 ※ 서류 제출 시, 개별서류가 스테이플러로 고정되어있지 않거나 리스트 순서대로 취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반송처리 - 성명변경 시, 변경 전후 성명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 초본 원본 제출 - 휴·복학 시, 휴복학 확인서(학적부) 원본 제출 - 원본 제출서류를 컬러복사 또는 스캔하여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하므로 원본 확인
사진변경	- 자격증 사진은 ‘인정(판정완료)’ 단계까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 - 사진의 화질이 낮거나 얼굴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자격증 발급 불가(사진변경 필수)
자격증 발송	- 대학(교) 졸업이후 7일 이내 졸업확정 공문과 졸업증명서 원본 제출(필수) - 졸업확정 공문 및 졸업증명서 원본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 불가 ※ 공문 양식 : 부록2 참고 - 단체신청의 경우, 자격증 개별 발송 및 개별 수령 불가
기타	- 보완서류가 필요할 경우, 단체신청 담당자에게 내용을 일괄 통보하므로 ‘마이페이지’ → ‘단체번호’ 클릭 → ‘개인접수번호’ 클릭하여 보류사유 확인 후, 추가보완서류 취합하여 제출요망 - 유사교과목 심의 요청 시 학과장발행 공문, 유사교과목 확인서, 이수연도/이수학기 강의계획서 제출 ※ 교과목 이수 기준이 상이한 대상자는 별도 표기 요망 ※ 유사교과목확인서 양식 : 부록7 참고 - 보육교사교육원은 수료일자가 교육이수 종료일(수료식일자 아님)이므로 보육통합시스템에 기재된 수료일자 재확인 후, 단체신청 공문에 기재 필수

●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전 확인사항

구분	내용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등록	• 2013.3.1.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을 등록·관리 - 기간: 보육실습생 등록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 - 방법: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교육관리→보육실습생관리' 에서 등록관리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육실습확인서에 어린이집 원장·학과장 직인날인 후, 제출 ※ 직인 스캔, 복사본 인정 불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등록 내용과 제출한 보육실습확인서의 정보가 일치해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잘못된 정보를 등록하였을 시,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오기재된 정보에 두 줄을 그어 올바른 정보 및 오기재 사유를 기재하여 어린이집 원장 직인날인 후, 제출 ※ 보육실습기간 수정 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실습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지도확인서' 제출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미등록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 > 15번(2017.1.1. 이후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빈칸 없이 기재 및 어린이집 원장·학과장 직인날인 후 제출 ※ 2017.1.1.이후 보육실습자가 2017.1.1.이후 양식 미사용 시, 보류. 양식 재확인 후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미등록 시, 추가서류(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어린이집유치원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확인서) 제출요망 - 어린이집유치원 인가증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은 인정불가 -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학교장 발행 공문으로 방과 후 과정 운영시점, 보육정원 등을 명기하여 제출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계약증서' 로 갈음 가능 - 방과 후 과정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내 '시설종류' 에 방과 후 과정 유치원으로 기재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확인서류* 제출요망 * 방과 후 과정 운영여부 기재된 교육청장 발행 '인가서' 또는 방과 후 운영 실시일이 기재된 유치원장 직인 날인된 공문서

※ 보육실습기간 내에 명절·공휴일·방학 등에 따라 기본 실습기간(6주 2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연속실습 확인을 위하여 출근부 및 가정통신문 등을 제출요망(원장 직인 날인필수)

※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자격증 발급을 위한 처리기간이 연장되므로 자격증 신청 전, 반드시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필요

● 보육실습 관련 서류사유 및 제출서류

구분	서류사유	추가 제출서류
이수학점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 P 처리	- 보육실습 성적 확인서류 · 학과장 발행 공문 및 학과내규, 보육실습 교과목 평가 점수 확인서류 등
실습기관	유치원 실습	- 방과후 과정 운영확인서 · 방과후 과정 최초 운영시점이 포함된 인가증 사본 · 인가서가 없는 국공립 유치원 등의 경우, 방과후과정 운영시점 및 보육정원을 명기한 실습기관장 또는 학과장 발행 공문
실습기간	2016.12.31. 이전 실습자의 분할 실습	- 야간대학 또는 원격대학 확인을 위한 공적 서류 · 학과장 발행 산업체반 명단 첨부한 공문 · 야간 대학생임이 명시된 학적부 등 ※ 대학의 명칭이 사이버/디지털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추가서류 미제출
실습시기	휴 · 복학에 의한 학기 내 실습 미이수	- 학과장 발행 사유 공문 - 휴복학 확인서류 ※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예외 인정
보육실습 확인서	보육실습확인서 양식 불일치	- 보육실습 당시 연도에 맞는 보육실습확인서 양식에 기재 후 제출
기타	보육실습확인서 직인 누락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재제출(제출서류 반환 불가)
	보육실습확인서 내, 정보 미기재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재제출(제출서류 반환 불가)

※ 서류 후, 추가로 제출된 서류로 재검정 진행하며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 확인 후 판정, 또는 검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 서류 발송주소

(0430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질문과 답변

【 보육교사 2급 】

Q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재)입학 하는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A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편(재)입학 하는 경우 동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조건 등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예시) 2017년에 3학년으로 편(재)입학한 경우, 2015년도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대면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Q2	대면 교과목은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과 ‘1회 이상 출석 시험’ 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석 수업(8시간)을 나누어서 수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2	출석 수업의 운영방식은 교육기관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석수업(8시간)을 나누어서 수강 가능하며 과목당 총 8시간 이상 대면으로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1회 이상 출석 시험은 8시간 출석 수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7년 8월에 학위 취득을 했는데 보육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1과목만 학점은행제를 통해 추가로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3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하여야 인정 가능합니다.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 후 학위 미취득시, 교과목 및 학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현행(3개 영역, 17과목 51학점) 기준에 맞춰 부족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하여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2015년도 3월에 입학하여 ‘영아발달’ 을 이수한 후 휴학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 복학예정입니다. 보육필수영역에서 ‘유아발달’ 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해당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이수해야 하나요?
A4	2014년 1월~2016년 12월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하여 교육과정

	변경으로 “유아발달” 과 “영아발달” 중 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새로 개설된 “영유아발달(3학점)” 을 이수하면 보육필수영역 6과목 18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유아발달” 과 “영아발달” 두 교과목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영유아발달(3학점)” 을 이수하고 종전기준 6개 영역 중 보육필수 및 보육실습 영역을 제외한 선택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거나 개정기준 3개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면 인정됩니다.
--	---

Q5	2019년 2월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 이미 “영아발달” 과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저는 “영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영아발달” 과 “유아발달” 교과목을 이수해도 “영유아발달”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5	2018.1.1. 이후 학위취득자라도 “영아발달” 과 “유아발달” 두 개의 교과목을 모두 이수했다면 “영유아발달”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6	2015년 3월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하여 2019년 2월에 졸업예정입니다. 17년도 2학기에 ‘아동복지(론)’ 교과목 대신 개정된 ‘아동권리와 복지’ 를 수강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요?
A6	종전기준(2014.3.1. 시행) 대상자가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아동복지(론)’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2017.1.1. 이후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대면교과목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Q7	2019.1.1. 이후 학점인정 기관 등을 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 전 교과목인 ‘아동문학’ 과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교과목을 이수하였는데 이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요청을 해야 하나요?
A7	2018.1.1. 이후 학점인정 기관 등을 통해 학위취득 대상자가 개정 기준에 따라 ‘아동문학교육’ 과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를 이수해야하나, 개정 전 교과목인 ‘아동문학’ 과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를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인정됩니다.

<대상 교과목>

영역	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지식과	아동문학교육	아동문학
기술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개정 전 기준 대상자(6개 영역, 17과목 51학점 이수대상자)가 ‘아동문학교육’ 과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를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인정

【 보육교사 3급 】

Q1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류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1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 외의 추가 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 고등학교 졸업관련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류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고등학교 졸업관련 서류 및 해당학교의 정식인가여부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서류,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 중국학력 소지자 : 서울 공자아카데미를 통한 학력확인서류 ※ 일본학력 소지자 : 주한일본대사관 발행 인장증명서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 보육실습 】

Q1	현장실습 시작 시점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나, 현장실습 기간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인정되나요?
A1	현장실습 시작 당시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이어야 하므로 현장실습 기간 중 또는 실습 종료 후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실습기관이 실습 중도에 평가인증 취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8.1.시행) 개정에 따른 보육실습 대상자의 경우,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습이 시작된 후, 실습기관의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습시작 당시 실습기관이 평가인증 유지 기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평가인증서, 정보공시화면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대면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과 ‘1회 이상 출석 시험’ 을 실시해야 하는데 ‘보육실습’ 이론수업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A3	보육실무영역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 은 보육실습기준에 따릅니다. ‘보육실습’ 교과목은 이론수업과 보육현장실습으로 운영해야합니다. 다만, ‘보육실습’ 이론 교과목은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과 ‘1회 이상 출석 시험’ 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2015년에 입학하였습니다. 보육실습 교과목은 2017년 1학기에 이수하고, 보육 현장실습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실시한 경우, 실습기간은 6주 240시간 인가요?
A4	보육실습 이론 교과목은 2017년 1학기에 이수하더라도 보육 현장실습을 201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연속 실습을 마칠 경우,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입니다. 단, 2017년 1월부터 보육 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개정기준(6주, 240시간)에 따라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습은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Q5	2018년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I, II로 나누어 개설하고 보육실습 I 교과목 이수 시 3주(120시간), 보육실습 II 교과목 이수 시 3주(120시간)로 나누어 실습을 이수할 수 있나요?
A5	보육실습 교과목을 I, II로 나누어 개설한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방학 포함)에 1회씩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회의 현장실습 기간의 합이 6주 240시간 이상이면 인정 가능합니다.
Q6	2018년도 1학기에 보육실습 I, 2018년도 2학기에 보육실습 II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은 각각 2학점과 1학점으로 나누어 이수한 경우 합산하여 인정되나요?
A6	보육실습 I, II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17.1.1. 이후 대학 입학자/2018.1.1.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보육실무영역(2과목)에서 6학점 이상 이수 필수

Q7	2018년도 1학기에 ‘학교현장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4주 160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하였고, 2018년 2학기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4주 160시간 실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습 교과목 명칭이 달라도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각각 인정이 되나요?
A7	‘보육실습’의 유사교과목으로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명칭이 달라도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

Q8	2019.1.1. 이후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2017.2월 이전에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완료하였는데 새로운 기준(6주 240시간)으로 보육실습을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A8	학점은행제를 통해 2018.1.1. 이후 학위 취득 예정이더라도 2017.3.1. 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경우, 학위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개정된 기준으로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Q9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하여 2016.12월에 4주 160시간으로 실습을 하고, 2017년 1학기 ‘보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여 70점을 받았습니다. 2017년 2학기에 재수강을 하면 6주 240시간 실습을 다시 해야 하나요?
A9	보육 현장실습 평가점수는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습기간을 충족하였더라도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인정 불가능합니다. 보육실습 재수강 시,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습하는 경우 개정된 기준(6주 240시간,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에 따라 실습하여야 합니다.

Q10	보육실습을 3회 이상 나누어 분할하여 진행해도 되나요?
A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8.1.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대상자의 경우, 6주 240시간의 실습기간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하며 3회 이상 분할 실습은 불가합니다. 다만, 실습 기간 내 방학기간 또는 가정학습기간 등의 사유로 2회 분할 실습 이외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출근부 및 가정통신문, 주간계획안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1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2013년에 입학하여 12과목 35학점 대상자입니다. 2017년 2학기에 6주 240시간 현장실습을 하고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했는데 2학점으로 이수해도 괜찮은가요?
A11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2017.1.1. 전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보육실습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라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12과목 35학점 대상자도 6주 240시간 실습을 실시해야 하나 2학점으로 이수해도 무방합니다. ※ 17.1.1. 이후 대학 입학자/2018.1.1. 이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보육실무영역(2과목)에서 6학점 이상 이수 필수
Q12	보육실습 지도교사의 연차(예: 여름휴가 또는 연수)나 병가일 경우 공백기간에는 보육실습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2	보육실습은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을 가진 실습지도교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기존 실습 지도교사의 공백 기간 동안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에게 실습 지도를 받으면 인정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실습을 지도한 교사 2명 모두를 입력해야 하며 1명만 입력되었을 경우,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지도교사의 ‘1급 자격증 사본’ 및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 실습생 지도확인서’를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Q13	2018년 8월 실습예정자입니다. 실습을 진행할 때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휴게시간도 실습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A13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실습시간을 8시간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 】

Q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2012.8.5.) 당시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여 경과조치에 따른 직무교육(80시간)을 이수한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에 따라 직무교육을 2016.3.1.까지 이수한 경우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로 계속 근무 가능합니다. ※ 자격확인서 신청 시: 인터넷 신청 및 구비서류(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교과목 이수 확인 가능한 성적증명서) 제출 필수

Q2	8과목 16학점 이수기준과 8과목 24학점 이수기준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2	• '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할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Q3	특수교육 또는 재할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특수교육 또는 재할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법령상의 교과목 명칭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교과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사교과목 심의를 위한 서류(교육기관 발행 심의요청 공문, 유사교과목확인서, 해당과목 강의계획서 등)를 제출하셔서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 이용 】

Q1	자격증 신청(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이용)에 필요한 PC사항은 어떠한가요?
A1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의 경우, 윈도우 xp 이상의 모든 운영체제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윈도우 익스플로러 10, 11 버전에서 호환문제 발생으로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을 낮추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내 PC의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 확인방법 [윈도우 익스플로러] - [F12] - 브라우저 모드 확인 * 윈도우 익스플로러 버전 낮추는 방법(다운그레이드 방법)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 '업데이트 설치 제거' 창 - Internet Explorer로 표시된 모든 업데이트 파일 삭제
Q2	단체신청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단체 아이디, 비밀번호 분실 시, 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1661-5666) 또는 카카오톡(ID:보육교사자격)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3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A3	로그인 및 회원가입 시 페이지가 멈춘 상태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설정]의 보안 항목에서 'SSL 2.0 사용' , 'SSL 3.0 사용' 체크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Q4	'보안' 설치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A4	'보안' 설치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페이지 맨 하단의 [보안프로그램 이용안내] 클릭 - [통합 보안프로그램 설치 실행] 클릭 - 설치 한 후, 다시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5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신청 및 사진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거나 홈페이지 및 결제 화면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원활한 자격증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인터넷 설정 후, 자격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I. 호환성 보기 설정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 [호환성 보기] 클릭 - '이 웹사이트 추가' 에 childcare.go.kr 입력 후 [추가] 클릭 - '호환성 보기에 추가한 웹사이트' 에 'childcare.go.kr' 등록 여부 확인 - 열려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모든 화면을 닫고 다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시작 II. 콘텐츠 표시 설정 변경 [인터넷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 '혼합된 콘텐츠 표시' [사용]으로 설정 - [확인] 클릭 III. 윈도우 업데이트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windows update] - [업데이트 설치] 클릭 후, '모든 사항' 에 대해 업데이트 진행 ※ I, II를 진행 후에도 화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III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6	홈페이지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PC에 캐시나 기타 임시저장 파일이 지정해놓은 저장용량보다 크거나, 남은 공간이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캐시삭제(임시인터넷파일삭제) 후 PC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캐시 삭제 방법 [익스플로러] - [도구] - [인터넷옵션] - [파일삭제] - '오프라인항목 모두 삭제'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시 캐시 삭제 가능

【 신청취소 및 환불 】

Q1	2018.2월 졸업예정이었는데 이수과목 부족으로 졸업이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자격증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서류접수가 되어 있는데 신청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A1	수수료 환불 규정에 따라 '서류접수완료 전' 까지만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서류접수완료 이후에는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졸업 후 재신청하여 구비서류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2	이번달 중순에 신청취소를 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월말인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환불금 입금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A2	환불 요청에 따른 입금처리는 환불요청 익월 25일 내외로 처리됩니다.



부록

부록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대학교)

※ 본 공문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사업지원국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학(교) ○○학과 ○○년도 졸업자 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합니다.

졸업일자(수료일자)	신청인원
2018년 ○월 ○일	○명

붙임 1. 단체 신청자 리스트 1부, 끝.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기안자직위 ○○○
협조자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총장 또는 대학장의 직인을 받아야함. 학과(부)장의 직인은 해당 되지 않음

부록1-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보육교사교육원)

※ 본 공문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사업지원국장)

경 유

제 목 ○○○보육교사교육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 보육교사교육원 ○○년도 수료자 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합니다.

수료일자(교육종료일)	수료식일자	신청인원
2018년 ○월 ○일	2017년 ○월 ○일	○명

붙임 1. 단체 신청자 리스트 1부, 끝.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협조자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보육교사교육원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부록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공문 예시

※ 본 공문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사업지원국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학(교) ○○학과 ○○년도 단체 신청자 중 총○○명이 최종 졸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일자	신청인원	졸업자
2018년 ○월 ○일	○명	○명

3. 단체신청인원 중 ○명은 졸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취소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연번	졸업취소자 성명	생년월일	취소사유
1	홍길동	000000	

붙임 1. 졸업확정자 명단 1부

2. 졸업증명서 00부. 끝.

○○대학(교) 총장 / 대학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총장 또는 대학장의 직인을 받아야함. 학과(부)장의 직인은 인정 불가

부록3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환불요청 공문 예시

※ 본 공문양식은 단체신청 기관에서 공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예시 양식입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양식 사용 시, 예시 공문에 안내한 내용을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사업지원국장)

경 유

제 목 ○○대학(교) ○○학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환불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대학(교) ○○학과 ○○년도 단체신청인원 중 ○명의 신청취소(졸업유예)에 따라 환불을 요청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1	홍길동	000000	한국은행	0000-00-00000	홍길동

붙임 1. 환불요청자 리스트

2. 환불요청자 통장사본. 끝.

○○대학(교) 학과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환불요청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학과(부)장의 직인 가능

※ '나의 진행현황'이 '서류접수완료'가 된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판정결과가 불인정인 경우도 포함)

부록4 보육실습확인서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 름	생년월일	양성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보육정원	
기관종류		최초인가일	년 월 일
평가인증 유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락처	
주소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요일 ~ 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을 준수하여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2. 보육실습 지도교사 1급 자격증 사본 1부 3.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단, '13. 3. 1.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보육실습 이수자의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양성교육기관명에는 재학 중인 대학 또는 교육기관명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실습기관	2017. 1. 1.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단, 2016. 12월 말까지 보육실습 이수자는 평가인증 기간을 제외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실습기관명 : 보육실습을 이수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명을 기재합니다. 나. 실습기관 보육정원 : 실습기관이 인가받은 정원을 기재합니다. 다. 기관종류 :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기재합니다. 라. 최초인가일 : 실습기관의 최초 인가일자를 기재합니다. 마. 평가인증 유지기간 :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실습 시작 당시)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기간을 기재합니다. 바. 주소 : 실습기관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사. 연락처 : 실습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실습 지도교사	2007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부터는 실습 지도교사의 이름, 자격 종류(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중 택1), 자격번호를 기재합니다. ※ 2006년까지 보육실습 이수자는 지도교사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 기간	보육실습 이수년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2007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나. 2006년 보육실습 이수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다. 2005년까지 보육실습 이수자 : 주간,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 총 시간은 1일 실습 시간에 실습 일수를 곱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예 : 8시간(1일 실습 시간)×30일(실습 일수)=240시간)
직 인	보육실습확인서 1장에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을 모두 날인해야 합니다. ※ 교육기관별(대학, 보육교사교육원, 평생교육원) 학과장 직인 날인 방법 • 대학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학과장 직인 날인 • 보육교사교육원 :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날인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장 직인 날인

부록5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예시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

보육실습생 ○○○는 아래의 보육실습기간 동안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 지도 기준을 준수하여 실습을 지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성 명 : ○○○
2. 실습생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3. 실습기관 : ○○○ 어린이집(유치원)
4.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5.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양성교육기관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 교육원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작성방법: 실습 지도교사가 동일한 보육실습 기간 내에 지도한 전체 실습생의 성명, 양성교육기관(학교 및 학과명, 교육원명)을 작성

대면 교과목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번 :
- 전공학과명 :
- 대면 교과목(명) 확인내역

구분	법령교과목	이수교과목	이수년도	대면교과목 이수 여부
교사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예) 보육교사론	(예) 2017	(예) 이수
	아동권리와 복지			(예) 미이수
보육관련 지식 및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예)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4] 제2호에 따른 ‘대면 교과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상기교과목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원격 대학(사이버/디지털 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4년제,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제출대상 제외

부록7 유사교과목 확인서 예시

유사교과목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학 번 :
- 전공학과명 :
- 유사교과목(명) 확인내역

법령교과목	유사 교과목명 (이수한 교과목 명) * 이수한 학기도 표기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비고

위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은 영유아보육법령·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법령교과목에 해당됨을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학과장 ○○○ (인)

부록7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 2013.3.1.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생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관리절차 안내

1. 보육실습생 등록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② 메뉴보기 > 교육관리 클릭



③ 메뉴보기 > 교육관리 클릭 > 보육실습생 관리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left sidebar contains a menu with the following items: 어린이집운영, 매미사랑카드, 보조금, 커뮤니티, 사용자, 안전공제회, 평가인증, 교육관리, > 누리과정, > 장애영유아 전문교육과정, **보육실습생관리** (highlighted with a red box), 임시보육, and 업소매기.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search bar with fields for '실습기간' (Practicum Period) and a '검색'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table with columns: 번호, 양생교육기관, 최초인가일, 지도교사, 실습지도교사, 자격종류, 자격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and 제출여부. A '등록' (Registration) button is visible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main content area.

④ 보육실습생 관리 > 등록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interface. The left sidebar is the same as in the previous screenshot, with '보육실습생관리'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shows the search bar and table. A red box highlights the '등록' (Registration) button in the top right corner of the main content area, with a callout bubble containing the text '① 등록 클릭' (Click Registration).

⑤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입력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빈칸 입력

I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 실명확인 ☐ 외국인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실습기간 *	출 시간 (매주 월 ~)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 시설종류	가정	최초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II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⑥ 실습기간 체크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2*****	☒ 실명확인 ☐ 외국인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실습기간 *	출 시간 (매주 선택 ~ 요일 ~ 매주 선택 ~ 요일까지 1월 시간)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간 보육정원	19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거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II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⑦ 시작요일과 종료요일 입력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 닫기



Ⅰ 실습대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육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 외국인 ☐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출 시간 (매주 선택 ~ 매일 선택) 요일까지 1일 시간 오전 9 시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시작요일과
종료요일을 입력

실습기관명	ㅇㅇ어린이집		
실습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Ⅱ 실습지도교사

추가 | 저장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⑧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입력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 닫기



Ⅰ 실습대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육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 외국인 ☐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출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시간) 오전 9 시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입력

실습기관명	ㅇㅇ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장형	19
실습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Ⅱ 실습지도교사

추가 | 저장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⑨ 총 실습시간 자동계산, 입력한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후 저장 클릭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저장 클릭



실습대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성명(한글) *	000000	2*****	실명확인	☐ 외국인
기본사항	양성교육기관 *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요일 ~ 매주 금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시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		
	연락처				

⑥ 총 시간과 실습주차 자동계산되어 반영

⑧ 등록 확인버튼 클릭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대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⑩ 실습지도교사 '추가' 클릭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닫기



실습대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성명(한글) *	나보육	주민등록번호 *	000000	2*****	실명확인	☐ 외국인
기본사항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요일 ~ 매주 금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시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장원	19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⑨ 실습지도교사 추가 클릭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대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⑪ 재직중인 보육교사 1급 지도교사 선택

Ⅰ 실습미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미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육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 외국인 ☐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장원	19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기관명, 시설종류, 연락처, 주소, 최초인가일, 주소에 따라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⑩ 이름의 공백 클릭
재직중인 보육교사 1급 지도교사 선택

Ⅱ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1	☐	이한국 박진홍		



⑫ 지도교사 자격번호 입력 후 '저장' 클릭

Ⅰ 실습미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미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육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 외국인 ☐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장원	19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미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등록한 후,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⑬ 저장 확인버튼 클릭

⑫ 저장 클릭

⑪ 지도교사 자격번호 입력

Ⅱ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1	☐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⑬ 완료 '확인' 클릭

Ⅰ 실습미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미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육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 외국인 ☐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오후 6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시설종류	가정
	연락처	02-000-0000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미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웹 페이지의 메시지

! 보육실습생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⑭ 완료 확인버튼
클릭

Ⅱ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1	☐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2. 보육실습생 조회

① 실습기간을 달력 모양 아이콘에서 선택하여 검색

② 해당 기간에 입력했던 실습생의 정보 확인가능

3. 보육실습내용 제출

① 보육실습생관리 조회화면에서 제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제출' 버튼 클릭

00아래미집 [감원장] 로그인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무단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언 ★ 사랑나눔 방 ★ 서식공유(법령, 지침) ★ 원격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_____ 실습기간 : 2013-10-07 ~ 2013-11-01 검색

※ 어린이집에서 등록한 보육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보육실습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초인가일	지도교사명	실습지도교사명	자격종류	자격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제출여부
☒	나보육	000000-2-*****	한국대학교	2006. 10. 31	1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	2013-10-07~2013-11-01	180	미제출

등록 수정 삭제 제출 인쇄

① 제출 대상 클릭

② 제출 클릭

② 보육실습확인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입력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제출' 클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_____ 실습기간 : 2013-10-07 ~ 2013-11-01 검색

※ 어린이집에서 등록한 보육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보육실습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내용확인)

1. 실습대상자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명
나보육	000000-2-*****	한국대학교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00아래미집	실습기관 보육장원	19
기관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주소	연락처		
서울시 △△구 □□동	02-000-0000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종류	자격번호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4. 실습기간

실습기간	2013-10-07~2013-11-01 (4 주간)
실습시간	총 180 시간 (매주 요일 ~ 요일 까지, 오전 09시 ~ 오후 18시)

- 경 고 -

입력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되지 않으며 잘못입력한 정보는 보육실습생이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은 보육실습 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 클릭

제출 보기

③ 제출 확인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 완료

(실습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제출 처리됨)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내용확인)

1. 실습매수자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명
나보육	000000-2-*****	한국대학교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00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장원	19
기관종류	가정	최초인가월	2006-10-31

3. 제출사항

작성일자	작성시간	작성인
2013-10-07	10:00:00	박진홍

4. 실습기간

실습기간	2013-10-07~2013-11-01 (4 주간)
실습시간	총 180 시간 (매주 요일 - 요일 까지, 오전 09시 - 오후 18시)

- 결 고 -

입력하신 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입력한 정보는 보육실습생이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은 보육실습 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취소

보육실습내용 제출

4. 보육실습확인서 인쇄

① 보육실습생관리 조회 화면에서 인쇄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인쇄’ 클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 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00어린이집 [검열장]

무단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업무연락 FAQ 질의 및 제언 사랑나눔 방 서식공유(법령, 지침) 원격지원

보육 실습확인서 인쇄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실습기간 : 2013-10-07 ~ 2013-11-01 검색

※ 어린이집에서 등록한 보육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보육실습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초인사일	지도교사수	실습지도교사이름	자격종류	자격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재출여부
☒	나보옥	000000-2*****	한국대학교	2006.10.31	1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	2013-10-07~2013-11-01	180	미제출

등록 수정 삭제 재출 인쇄

① 인쇄 대상 클릭

② 인쇄 클릭

②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 후 출력. 출력 후 어린이집 원장 및 학과장 직인 날인 필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자격증 단계신청 방법 안내

2018년 11월 인쇄

2018년 11월 발행

발 행 인 : 한구보육진흥원장

발 행 처 : 한국보육진흥원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전 화 : 02) 6901-0100(代)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

인 쇄 처 : 아람에디트(T.02-6925-6942)

* 이 책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